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8.17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성

나.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6조,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산업·고용, 기업 경영환경 등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다.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등 (안 제8조)

시·도지사는 예방조치의 목표, 전략, 이행 수단 등을 담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기간 등 (안 제9조, 제10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조정 계획 등으로 인하여 지역 산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가능
-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규정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의 지역경제 의존도와 산업·지역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변화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안의 공고 등 (안 제13조)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

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융·고용, 연구개발·사업화, 판로·수출,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기준 (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 여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 절차의 신속 진행 (안 제20조)

시·도지사가 예방계획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하며, 이 경우 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 가능

차.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고용, 판로·수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안 제2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함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안 제26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등 (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 해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별 산업구조 및 고용 등에 관한 사항
- 2. 지역별 주요 기업의 경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 3. 지역별 경제여건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별 산업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분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및 추이

2. 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의 변화 및 추이

3. 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 지표의 변화 및 추이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하여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목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3.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주된 산업 내 기업 동향, 종사자 수 변동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역 산업의 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8조제2항제2에 따른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긴급한 자금지원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등)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중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다.

②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명칭·위치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3. 산업위기지역계획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

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

나.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

다.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의 지역 내 특화 정도

2.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정도

가.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고용과 사업장 수를 나타내는 지표의 변화

나.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생산을 나타내는 지표의 변화

3.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정도

가.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의 변화

나. 해당 지역의 전력 사용량의 변화

다. 해당 지역의 상권 휴·폐업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표의 변화

4. 그 밖에 지역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평가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범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군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공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의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평가기준에 관한 검토 자료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 해당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운영보고서의 작성)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신청요건에 따른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동향 및 경제 상황
 2.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 이행 실적
 3. 제15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 ② 그 밖에 운영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오자·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의 수정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의 변경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내용
3.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당시의 주된 산업, 경제 상황 등이 충분하게 회복하여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투자 지원사업
2. 공장의 신설·증설 지원사업
3. 경영혁신 또는 업종전환에 대한 지원사업
4.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철도, 공항·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3.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녹지
5. 그 밖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23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일 것

2.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3. 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담실 등 시설을 갖출 것

②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의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컨설팅 지원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금융·재정 지원

2.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3. 판로 및 수출 지원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3.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평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평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의 시책에 따른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제출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위기지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2.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3.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제30조(과태료)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부터 제15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4422